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2-32호
2022. 5. 18.(수)

차 례

예 규(1)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제1호) 1

공 고(1)

-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공고 제2022-530호) 32

공
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권한대행 부의장 김 홍 태

2022년 5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규 제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의회사무과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지정)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로서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의회의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의회 소속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의장이 요구하는 경우 자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힌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의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의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사람에게 자체 없이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조치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 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대한 조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 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 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

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공직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부패 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①의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은 이 지침 별표1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경우에는 별 표2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법 위반 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 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 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호 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호 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2 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 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등 거부행위 · 같은 법 제20조의2 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1조제2 항에 따라 확정된 보 호조치결정 미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호 하목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 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별표2]

법 위반행위 관련 지방의회의원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 청제출 의무 위반	제 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 사 과	공개회의에서 경 고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제 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 사 과	공개회의에서 경 고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한 부당행위	제 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 사 과	공개회의에서 경 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신고방해, 취소강요 및 불이익조치	제 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 사 과	공개회의에서 경 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 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 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같은법 제19조제2항제3항 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같은법 제20조의2의 특별보 호조치 결정 미이행 .같은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 이행	제 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 사 과	공개회의에서 경 고	「지방자치 법」 제10조 (징계의종 류와 의결)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제 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회의에서 사 과	공개회의에서 경 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① 담당 업무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한국어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③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시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④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실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업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⑤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청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② 직무관련자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기타()		

참고자료			
------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종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신고·신청인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조치대상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조치결과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 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卷之三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개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 직무 대리자 지정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유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기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개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보유자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본인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	--

부동산	유형 [] 토지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input type="checkbox"/> 지상권 <input type="checkbox"/> 전세권 <input type="checkbox"/> 분양권) [] 건물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input type="checkbox"/> 전세(임차)권 <input type="checkbox"/> 분양권)	취득(예정)일
	소재지	
	지번	지목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자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small>신고인과의 관계</small>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small>연락처</small>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
	<small>(2) 직무관련자</small>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small>(3)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small>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거래			
거래내용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small>참고자료</small>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채용 예정일
	연락처	생년월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자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성명	<u>연락처</u>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직무관련자 (퇴직자)

-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신고인 [] 퇴직공무원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한국어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p>[] 개인</p> <table border="1"> <tr> <td>성명</td> <td>연락처</td> <td>직업</td> </tr> </table> <p>[]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p> <table border="1"> <tr> <td>성명</td> <td>연락처</td> <td>직업</td> </tr> </table> <p>[]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p> <table border="1"> <tr> <td>성명</td> <td>연락처</td> <td>직업</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td> <td>대표자 성명</td> <td>소재지</td> </tr> </table>				성명	연락처	직업	성명	연락처	직업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성명	연락처	직업													
성명	연락처	직업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p>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p>															
<p>신고경위 및 이유</p>															
위반행위 신고	일시	내용													
	장소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二〇一九年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신고자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피신고자 성명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신고인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위반행위 신고사항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종결사유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자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한국어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전자우편 [] 전화 [] 방문 [] 기타()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기타()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상담내용			
상담결과			

四〇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덕구의회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침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정(안 제3조 ~ 제11조)
- 다. 신고 · 신청의 기록관리 및 위반행위 신고, 조치사항 등
(안 제12조 ~제20조)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1.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수립된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도로사선제한규정 등의 변경사항의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내용: 붙임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나. 공람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106)
3. 관계도서: 계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주민의견 제출
 - 가.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내용. 끝.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 지구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획지계획기준 : 변경없음

나) 공동건축지정 기준(권장) (변경)

○ 변경사유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주거지역내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규모 변경($90m^2 \rightarrow 60m^2$)으로 기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연속성 유지 및 과소필지 방지를 위한 기준 획지계획 유지

구 분	규 제	권 장
기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28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규모 $90m^2$ 미만 획지도로확보가 곤란한 맹지최소규모 미만의 획지 중 이미 공동건축 되었거나 토지소유자가 합의에 의하여 공동건축을 신청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획지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차량출입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도로접근이 불가능한 획지계획권장규모 미만의 획지상호간의 공동건축연접한 대지 간 자율적 공동건축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53조에 따른 지역여건,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규모 $90m^2$ 미만 획지도로확보가 곤란한 맹지최소규모 미만의 획지 중 이미 공동건축 되었거나 토지소유자가 합의에 의하여 공동건축을 신청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획지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차량출입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도로접근이 불가능한 획지계획권장규모 미만의 획지상호간의 공동건축연접한 대지 간 자율적 공동건축

주) 토지분할시 인접한 토지와 합필을 전제로 「건축법」 및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최소규모 미만의 분할가능

2)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변경)

○ 변경사유 : (불허용도)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규정 현행화

(높이 이) 「건축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전면도로 사선제한 규정 삭제

도 면 번 호	위 치	구 分	계 획 내 용
-	전구역	허용용도	-
		불허 용도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기정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변경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전면도로사선제한 1.5h (삭제)
			• 4층 이하
		기정	• 4층 이하
		변경	

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